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8. 25 선고 2016가단30597 판결 [가건물등 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농업회사법인 법원경매 주식회사

원고승계참가인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6. F

7. G

8. H

9. I

10. J

피고1. K

2. 주식회사 L

변론 종결2017. 8. 11.

판결 선고2017. 8. 25.

주 문

1. 피고 K는,

가. 원고승계참가인 M에게 충남 태안군 N 전 959㎡ 중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47, 48, 49, 50, 47의
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⑦ 부분 목조함석지붕 창고 6.4㎡, 같은 도면 표시 51, 52, 53, 54, 51의

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㉔ 부분 철파이프조천막지붕 창고 23.6㎡를 각 철거하고, 위 N 토지를 인도하고,

나. 원고승계참가인 B, C에게 충남 태안군 ○ 전 959㎡를 인도하고,

다. 원고승계참가인 D에게 충남 태안군 P 전 371㎡를 인도하고,

라. 원고승계참가인 E, F, G, H에게 충남 태안군 Q 전 1,322㎡ 중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55, 56, 57, 58, 5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산 부분 경량철조샌드위치판넬지붕 창고 112㎡, 같은 도면 표시 63, 64, 65, 66, 6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에프알피화장실 1㎡, 같은 도면 표시 59, 60, 61, 62, 5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자 부분 철조컨테이너 21㎡, 같은 도면 표시 67, 68, 69, 70, 6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㉕ 부분 철조컨테이너 18㎡를 각 철거하고, 위 Q 토지를 인도하고,

마. 원고승계참가인 I에게 충남 태안군 R 전 661㎡ 중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71, 72, 73, 74, 7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철조컨테이너 24㎡를 철거하고, 위 R 토지를 인도하고,

바. 원고승계참가인 J에게 충남 태안군 S 전 661㎡를 인도하라.

2. 피고 주식회사 L는,

가. 원고승계참가인 M에게 충남 태안군 N 전 959㎡ 중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47, 48, 49, 50,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㉖ 부분 목조함석지붕 창고 6.4㎡, 같은 도면 표시 51, 52, 53, 54,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㉔ 부분 철파이프조천막지붕 창고 23.6㎡에서 각 퇴거하고, 위 N 토지를 인도하고,

나. 원고승계참가인 B, C에게 충남 태안군 ○ 전 959㎡를 인도하고,

다. 원고승계참가인 D에게 충남 태안군 P 전 371㎡를 인도하고,

라. 원고승계참가인 E, F, G, H에게 충남 태안군 Q 전 1,322㎡ 중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55, 56, 57, 58, 5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산 부분 경량철조샌드위치판넬지붕 창고 112㎡, 같은 도면 표시 63, 64, 65, 66, 6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에프알피화장실 1㎡, 같은 도면 표시 59, 60, 61, 62, 5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철조컨테이너 21㎡, 같은 도면 표시 67, 68, 69, 70, 6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철조컨테이너 18㎡에서 각 퇴거하고, 위 Q

토지를 인도하고,

마. 원고승계참가인 I에게 충남 태안군 R 전 661m² 중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71, 72, 73, 74, 7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철조컨테이너 24m²에서 퇴거하고, 위 R 토지를 인도하고,

바. 원고승계참가인 J에게 충남 태안군 S 전 661m²를 인도하라.

3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4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, 원고승계참가인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원고 :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N 전 4,933m² 중 별지 도면1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ㄺ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⑦ 부분 사무실 약 60m², 같은 도면 ㄴ, ㄷ, ㄹ, ㄺ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컨테이너박스 약 28m², 같은 도면 ㄱ, ㄴ, ㄷ,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컨테이너박스 약 18m², 같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컨테이너박스 약 18m², 같은 도면 표시 a, b, c, d,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관정 및 물탱크시설, 같은 도면 표시 e, f, g, h, e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비닐하우스 약 100m²를 각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
원고승계참가인들 : 주문 제1, 2항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분할 전 토지인 충남 태안군 N 전 4,933m²(이하 '이 사건 분할 전 토지'라고 한다)는 원래 피고 K의 소유였으나, 2016. 6. 16.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6. 6. 22.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나.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. 8. 11.경 충남 태안군 N 전 959m², ○ 전 959m², P 전 371m², Q 전 1,322m², R 전 661m², S 전 661m²(이하 분할된 6필지 토지를 총칭하여 '이 사건 토지들'이라고 한다)로 분할되었다.

다. 이 사건 토지들 중 충남 태안군 N 전 959m²에 관하여는 2016. 8. 19. 원고승계참가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○ 전 959m²에 관하여는 2016. 8. 29. 원고승계참가인 B,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, P 전 371m²에 관하여는 2016. 8. 19. 원고승계참가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Q 전 1,322m²에 관하여는 2016. 8. 19. 원고승계참가인 E, F, G,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, R 전 661m²에 관하여는 2016. 8. 19. 원고승계참가인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S 전 661m²에 관하여는 2016. 8. 19. 원고승계참가인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라. 한편,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는 원고가 이를 경매절차에서 취득하기 이전부터 피고 K 소유의 가건물 등이 존재하고 있었는데, 구체적으로는 충남 태안군 N 전 959m² 중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47, 48, 49, 50,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는 목조함석지붕 창고 6.4m²가, 같은 도면 표시 51, 52, 53, 54,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④ 부분에는 철파이프조천막지붕 창고 23.6m²가, Q 전 1,322m² 중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55, 56, 57, 58, 5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산 부분에는 경량철조샌드위치판넬지붕 창고 112m²가, 같은 도면 표시 63, 64, 65, 66, 6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는 에프알피화장실 1m²가, 같은 도면 표시 59, 60, 61, 62, 5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는 철조컨테이너 21m²가, 같은 도면 표시 67, 68, 69, 70, 6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는 철조컨테이너 18m²가, R 전 661m² 중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71, 72, 73, 74, 7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는 철조컨테이너 24m²가 각 위치하고 있고, 피고 주식회사 L는 피고 K로부터 위 가건물 등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15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감정인 T의 측량감정결과, 변론 전체의

취지

2.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그 토지들을 해당

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양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,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.

3.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K가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존재하는 가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인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피고 K는 해당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존재하는 가건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, 피고 주식회사 L는 해당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가건물 등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심재남

별지